가업승계 세제상 업종유지요건의 정당성과 한계

박 혜 경*

목 차

Ⅰ. 서 론 ····· 197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가업승계 세제 내 업종 유지 요건의 운용 실태 ····· 199
1. 가업승계 세제의 발전과 구성체계
2. 사후관리 체계와 업종유지요건의 현황
3. 제도 구조 속에서 본 업종유지요건의 규범적 위치

Ⅲ. 업종유지요건의 규범적 정당성 평가 ····· 215
1. 평가 기준의 설정
2. 조세중립성 원칙에 따른 경제적 왜곡 분석
3. 헌법 및 조세법적 원칙에 따른 법리적 타당성 평가
4. 실증자료를 통해 본 업종 규제의 혁신 저해 효과

Ⅳ. 주요국의 실질 중심 사후관리 모델 분석 ·· 225
1. 비교법적 검토의 목적과 분석 기준
2. 유산취득세 체계의 사후관리 모델 : 독일 · 일본
3. 자본이득세 체계의 모델 : 캐나다 · 호주
4. 비교법적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Ⅴ. 산업 전환기에 부합하는 사후관리의 재설계 ····· 240
1. 사전 · 사후 업종 요건의 전면 폐지
2. 납부유예 및 이월과세와의 정합성 확보
3. '정당한 사유'의 일반 원칙화와 사업 전환 보장
4. 실질적 경영 계속성 중심의 통합 사후관리 모델
5. 고용 지표의 탄력화와 사회적 책임의 보조지표화

Ⅵ. 결 론 ····· 247

* 세무사

** 투고일 : 2026. 3. 25. 1차수정일 : 2026. 5. 1. 게재확정일 : 2026. 5. 14.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업승계 세제상 요구되는 업종유지요건의 헌법적 · 조세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산업 융복합과 사업 재편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해당 규범이 기업의 실질적 계속성 및 조세중립성 원칙의 관점에서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① 조세중립성 원칙 및 헌법상 비례성 · 명확성 · 체계정당성 원칙에 따른 규범적 검토, ② 가업상속공제 · 납부유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간 입법연혁 및 사후관리 규범의 정합성 분석, ③ 독일 · 일본 · 캐나다 · 호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검토 결과 첫째, 업종유지의무를 배제한 가업승계 납부유예 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업종 동일성은 가업승계 세제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한 규범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기반한 형식적 업종 동일성 요구는 잠김효과와 경제적 효율성 왜곡을 초래하여 기업의 전략적 사업 재편을 제약하는 한계를 보인다. 셋째, 주요국은 형식적 업종 기준이 아닌 총급여액 유지, 적극적 사업자산(ABA) 비중 등 '경영 실체(Substance)' 중심의 실질적 지표를 사후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논의가 사후관리 요건의 개별적 완화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캐나다식 ABA 테스트, 독일식 총급여액 기준, 호주식 적극적 자산 테스트를 결합한 '실질적 경영 계속성' 중심의 통합 사후관리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환기에 부합하는 성장지원형 가업승계 세제의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 **주제어 :** 가업승계, 업종유지요건, 조세중립성, 실질적 경영 계속성, 적극적 사업자산(ABA), 가업상속공제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후지필름은 더 이상 필름 회사가 아니다.” 경영학에서 산업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후지필름 홀딩스는 오늘날 기업의 영속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0년대 초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핵심 사업인 사진 필름 시장이 10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되는 위기 속에서,[1] 후지필름은 필름 제조의 핵심 기술인 콜라겐 나노 기술과 산화 방지 기술을 각각 헬스케어와 기능성 화장품 산업에 이식하며 성공적인 사업 전환을 이루었다. 반면,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 기존 필름 산업 중심의 사업 구조에 머물렀던 이스트먼 코닥(Eastman Kodak)은 2012년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두 글로벌 기업의 엇갈린 운명은 산업 전환기 기업의 계속성(Continuity)이 특정 제품의 지속적 생산이 아니라 핵심 기술과 자산의 재배치를 통해 유지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적인 경제 현실과 달리,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여전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기반한 ‘형식적 업종 코드’를 사후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따른 기업 해체를 막고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 제도이지만, 현행법상 승계 후 일정 기간 주된 업종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1) 매일경제, “[CASE STUDY] (21) 사업 다각화 모범생 후지필름 ‘필카(필름 카메라)’ 사라져도 필름 기술은 계속 진화한다”, 2017. 8. 21., https://www.mk.co.kr/news/business/7944652(검색일 : 2026. 3. 7.).

이러한 규제는 디지털 전환(DX)과 녹색 전환(GX)이 가속화되는 융복합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잠김효과'를 초래한다. 만약 후지필름이 한국의 가업승계 세제 하에 있었다면, 필름 자산을 의료기기와 바이오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종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막대한 조세 추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 활동의 영속성을 뒷받침하려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 나아가 가족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가업승계는 개별 기업의 사적 영역을 벗어나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좌우하는 거시적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2)]

나아가 제도 내부의 논리적 불일치도 심각하다. 2023년 도입된 가업승계 납부유예 제도는 동일한 정책 목적을 공유함에도 사후관리 요건에서 업종 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내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이 사후관리 위반의 예외인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동 규정은 업종 변경을 위해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제6호)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제7호)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생산적 재배치와 기술 혁신이 수반된다면, 형식적인 업종 코드 변경은 가업의 실질적 경영 계속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법 흐름은 업종 동일성이 가업승계의 본질이 아니라, 산업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정책 규범임을 보여준다.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가업승계 세제는 기업의 계속성과 고용 안정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과도한 조세특혜라는 비판도 받는다. 현행법의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은 이러한 조세 형평성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업승계 세제

2) 라정주,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규모이상 기업을 중심으로",『경제학연구』제65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17, 48면.

자체의 타당성을 논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핵심 사후관리 규범인 '업종 유지 요건'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가업승계 세제의 업종 유지 요건을 조세중립성과 헌법상 비례성 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의 형식적 규제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인지 검토한다.

나아가 독일과 일본의 고용 유지 기준, 캐나다의 적극적 사업자산(ABA) 기준, 호주의 적극적 자산 테스트 등을 비교 분석하여 업종 코드 없이도 기업의 실질적 계속성을 검증할 법적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 범위는 사후관리 요건 개편을 넘어 사전 업종 제한의 폐지 타당성까지 확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환기에 걸맞은 '성장 지원형' 가업승계 세제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가업승계 세제 내 업종 유지 요건의 운용 실태

1. 가업승계 세제의 발전과 구성체계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세제는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이 경영체(Business Entity)의 계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유권과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으로, 단순한 재산 이전과는 구별되는 '기업 존속'의 과제를 내포한다.[3]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승계 시점의 세부담을 감당할 유동성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경영권을 이전하거나 핵심 자산을 매각하게 됨으로써 생산 기반이

3) 박종수,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 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 45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입법자는 가업승계를 사적 부의 이전이 아닌 생산기반 유지와 고용 안정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부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가 도입된 것이 그 체계적 지원의 출발점이다.[4)]

최근 가업승계 세제는 ESG 경영 및 사회적 자본 보전이라는 가치와 결합하며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기업을 개별 가족의 소유물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영체'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가업승계의 본질이 특정 가계의 지위 유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유기적 실체의 실질적 존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세지원은 무조건적 혜택이 아니라 사전요건(적격성 선별)과 사후요건(계속성 검증)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담보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중 '업종 유지 요건'은 기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의 핵심 지표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산업 전환기를 맞은 오늘날, 해당 규범은 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즉, 업종 유지 요건은 단순한 절차적 규정을 넘어 제도의 정책 목적과 변화하는 경제 현실 사이의 긴장 관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핵심 쟁점이다.

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책 목적

가업승계 세제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속 및 증여 시점의 일시적 과세가 기업의 유동성 제약과 맞물릴 경우, 원치 않는 경영권 이전이나 핵심 자산 처분을 초래하여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이 사업용 자산으로 묶여 있고 비상장 주식의 유동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납세 재원 마련에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둘째, 가업승계가 단순한 사적 자산의 이전을 넘어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공급망 안정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4) 박종수, 앞의 논문, 45~47면.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아가 현행법상 '가업(家業)'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한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업'은 개별 가계의 부의 대물림이라는 협소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제도의 국민경제적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도의 본질이 중소기업의 존속과 발전 지원에 있음을 감안할 때, '가업'이라는 용어는 '기업승계' 또는 '사업승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제도의 목적이 개별 가계의 부의 보전이 아니라, 고용과 기술을 품은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기업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5] 요컨대, 가업승계 지원은 단순한 세부담 완화를 넘어, 세대교체기에도 기업이 축적된 역량을 발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조세지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결부됨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는 단순한 특혜 방지책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규범적 장치'로 작용한다. 고용 및 자산 유지 요건이 그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제도의 활용도가 저하되어 실효성이 유명무실하게 될 경우, 저조한 이용 실적은 제도의 존립 근거와 정책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귀결될 뿐이다.[6]

정책 목적의 정당성이 사후관리 규제 수단의 정당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기반한 업종유지요건은 산업 융복합 시대에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과 생존 전략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해당 규제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그리고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유지요건의 구조와 한계를 독립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

5) 김완석,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조세논총』 제5권 제2호, 한국조세법학회, 2020, 42면.

6) 김완석, 위의 논문, 5면.

나. 주요 제도의 종류와 도입 연혁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세제는 서로 다른 기능과 과세 방식을 가진 복수의 제도가 결합된 구조이다. 이 제도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에 따른 기업 해체를 방지하고 경영의 계속성을 확보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 다만 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방식과 과세 시점을 장래로 유보하는 방식 등 정책 수단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요 제도를 기능적 관점에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의 조세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상속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 해체를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감면형 지원제도로 기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 주식을 생전에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저율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이는 상속 이전 단계에서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유도함으로써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른 승계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승계 지원수단에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는 대표적인 과세이연형 지원수단이다. 세액 자체를 감면하는 대신,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가업을 영위하는 동안 납부 시점을 장래로 유보하여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공제 제도와 달리 업종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적 특징을 지닌다.

(4)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자본이득 과세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완적 장치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조세회피 방지책을 넘어, 가업상속공제를 완성하는 '과세이연형 구조'의 핵심 규범으로 기능한다. 즉, 상속세가 공제된 자산에 대해 상속인이 향후 자산을 처분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생전에 축적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최종 처분 시점까지 유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상속 시점의 과세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처분 단계까지 과세를 유예한다. 결과적으로 상속 시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함과 동시에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과세 공백을 메우는 정교한 정책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월과세 제도는 기업의 계속성을 지원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법리적 보완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업승계 세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구조적 변천을 거쳐 왔다.

(1) 제도의 도입과 핵심 체제의 정립기(1999년~2007년)이다. 199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부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신설된 이후, 1999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경영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제도의 골격이 정립되었다. 초기에는 제한적인 공제 한도로 출발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며 우리나라 가업승계 세제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2) 사전적 승계 지원의 확립과 외연 확장기(2008년~2022년)이다. 2008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설을 통해 상속 시점의 사후적 지원을 넘어 생전의 계획적 승계를 유도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2014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2016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

도를 도입[7]하여 조세 감면과 자본이득 과세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외연과 내실을 동시에 도모하였다. 다만, 이 시기는 혜택 확대의 반대급부로 사후관리 기간이 연장되고 업종 동일성 유지 요건이 강화되는 등 경직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3) 과세이연 방식의 도입과 유연성 강화기(2023년~현재)이다. 2023년 납부유예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세액 감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적 존속을 전제로 과세 시점을 유보하는 '과세이연형' 접근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후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 업종 유지 요건의 일부 완화, 기회발전특구(ODZ) 연계 특례 도입 등이 이어지며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세제 운용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변천 과정은 현행 세제가 단순한 세 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경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특정 제도에는 여전히 엄격한 업종 유지 의무가 잔존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가 변화된 세제 패러다임 하에서 기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기준인지에 대한 규범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다. 가업승계 세제의 설계 유형 : 세부담 경감 방식과 과세이연 방식

가업승계 세제는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조세채권의 처리 방식에 따라 '세부담 경감 방식'과 '과세이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8] 두 유형

---

7)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는 2015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8) 일각에서는 가업승계 세제를 세부담 경감 방식, 이월과세 방식 및 과세이연 방식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세부담 경감 방식과 과세이연 방식의 이분법적 구조로 파악한다.
첫째, 가업승계 세제의 본질적 차이는 조세채권의 종국적 소멸 여부에 있다. 세부담 경감 방식은 사후관리 요건 충족 시 조세채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반면, 과세이

은 기업 영속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공유하나, 조세채권의 확정 시기와 사후관리 규범의 법적 성격에서는 구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1) 세부담 경감 방식 : 해제조건부 감면과 조세채권의 소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승계 시점에 과세가액을 직접 공제하거나 특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즉시 경감하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제공한다. 법리적으로는 일정 기간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는 '해제조건부 감면'의 성격을 띤다. 국가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유예하고 사후관리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정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그 반대급부로서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엄격한 업종 유지 등 경영 형태의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2) 과세이연 방식 : 조세채권의 존속과 경영 자율성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조세채무 자체를 감면하지 않고 자산의 처분, 폐업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승계인의 사망 또는 재증여와 같은 종국적 과세 원인이 발생할 때까지 세액의 이행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조세채권이 국가의 과세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채권 확보가 이루어지므로, 기업이 생존을 위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조세채권 일실의 우려가 적다. 따

연 방식은 장래의 과세사유 발생 시까지 조세채권의 존속을 예정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역시 자산 처분 시점까지 조세채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과세이연 방식의 구조에 속한다.

둘째,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에 한하여 작동하는 보완적 장치로서 독립적인 적용 영역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독자적인 가업승계 지원수단이라기보다 가업상속공제의 정책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적 구조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셋째, 제Ⅳ장의 비교법 분석 역시 캐나다·호주의 자본이득세 중심 체계와 독일·일본의 유산취득세 중심 체계를 '세부담 경감 방식과 과세이연 방식'이라는 분석틀 위에서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류 체계와도 구조적 정합성을 가진다.

라서 이 방식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업종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3) 유형의 혼재와 이월과세의 역할 : 조세채권 확보의 실질적 담보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의 독특한 위치이다. 이 제도는 외견상 '세부담 경감 방식'인 가업상속공제와 결합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자산 처분 시까지 미루는 '과세이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한 세액의 종국적 소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월과세와 결합하여 과세권의 행사를 장래로 유보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월과세라는 장치가 존재하는 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전환을 위해 자산을 교체(처분 후 대체취득)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권은 유지된다. 결국 업종 유지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이월과세나 납부유예와 같이 조세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형식적인 업종 규제의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2. 사후관리 체계와 업종유지요건의 현황

가. 제도의 구조적 특징 및 입법 취지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세제는 직접적인 세액 감면형인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그리고 최근 도입된 과세이연형인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라는 세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승계 시점이나 조세채권의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승계 과정의 조세 부담이 기업의 존속과 고용 유지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공통의 규범적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들 제도

는 공통적으로 사전요건을 통한 ‘적격성 선별’과 사후요건을 통한 ‘계속성 검증’이 결합된 조건부 조세지원 구조를 취한다. 즉, 제도 적용 단계에서 가업의 실체와 승계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원 이후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경영참여, 지분, 자산, 고용 등이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위반이 발생한 경우 세액을 추징하는 사후 정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일한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각 제도에 적용되는 사후관리 요건의 강도가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업종 유지 의무를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으로 두는 것과 달리, 납부유예 제도는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업종 유지 의무가 가업승계 지원의 본질적 요건이라기보다, 제도의 설계 방식과 조세채권 확보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가변적 규범임을 시사한다.

나.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의 구체적 검토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제도는 사전적으로 승계 적격성을 선별하고, 사후적으로 계속성 유지 여부를 검증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특히 사후관리 단계에서 제도 간 규제 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표 1> 가업승계 세제별 사전·사후요건 비교

사후관리요건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사전요건	가업	중소·중견 (매출 5천억 미만)	동일 (단, 법인 주식 중심)	동일 (중소기업 중심)
	피상속인/ 증여자	10년 경영, 지분 40% 이상	10년 경영, 60세 이상, 지분 40%	상동 (공제·특례 요건 준용)
	상속인/ 수증자	18세 이상, 2년 종사 등	18세 이상, 2년 종사 등	상동 (공제·특례 요건 준용)

사후관리요건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사후요건	업종	대분류 내 변경 허용		의무 없음
	고용	근로자 수 90% 또는 총급여액 90% 유지 (5년 평균)[9]	–	근로자 수 70% 또는 총급여액 70% 유지 (5년 평균)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	–[10]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출처 : 법령 재구성>

사전요건은 가업(기업) 요건, 경영주체 요건, 승계인 요건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가업 요건으로서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열거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2025년 세법 개정은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 운영 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및 소상공인 영역까지 제도적 포용성을 넓히고 업종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가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를 포괄하는 것과 달리,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승계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개인사업자의 개별 사업용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구조적 차이가 나타난다.

경영주체(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의 가업 영위 기

9)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통산 평균이 기준 인원 및 기준 총급여액의 90% 이상이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022년 개정으로 매년 유지 요건은 폐지되고 통산 평균 기준으로 완화되었다.

10)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독립적인 자산 처분 제한 요건(40%)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가업의 폐업이나 처분 등으로 '가업의 유지'라는 실질이 상실된 경우에는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이 제한된다.

간 동안 최대주주 등 지분(40%, 상장 20%)을 보유하며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며, 승계인(상속인 · 수증자) 요건은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표이사 취임 등 경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인수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사후요건은 현행 5년의 관리 기간 동안 기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서 제도 간 규제 불균형이 드러난다. 경영참여 및 지분 유지는 공통된 지표이나, 고용 유지 요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90%의 엄격한 유지율을 요구하는 반면 납부유예 제도는 이를 70%로 완화하여 적용한다.[11] 특히 사업용 자산 유지 요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5년 내 40% 이상의 자산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위반 시 공제금액 추징)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제도(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독립적인 자산 처분 제한 비율을 사후관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12] 다만, 납부유예 제도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72조의2 제3항 제1호를 통해 여전히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을 금지하고 있어, 법인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잔존한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의 차이는 뒤이어 살펴볼 업종 유지 요건의 형식성과 대비되어, 사후관리 체계의 규범적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업종 유지 요건은 이러한 실질적 지표들과 비교할 때 그 형식적 성격이 확연히 드러난다. 고용, 자산, 지분 유지 요건이 기업의 생산 요소가 실질적으로 잔존하는지를 측정하는 규범인 반면, 업종 요건은 오직 사업 내용의 '통계적 분류 코드'만을 특정한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업종 변경을 독립적인 추징 사유로 취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납부유예 제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3항.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종사 및 지분 유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가업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 역시 지분 감소만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인 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이 취소 사유로 규정된다.

도에서는 업종 유지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구조라면 업종 변경을 통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조세 규범이 직접 제약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정책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납부유예 제도에만 상대적으로 폭넓은 업종 자율성을 부여한 현재의 체계는, 업종 유지 요건이 가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제도 설계상의 가변적 규범임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다. 업종유지요건의 구조와 실질 중심 사후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업승계 세제의 사후관리 체계는 도입 초기 기업의 외형적 고착화를 요구하던 ‘형식적 유지’ 중심에서, 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혁신 역량을 보전하려는 ‘실질적 계속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래 <표 2>의 연혁에서 확인되듯, 경직된 형식적 지표들이 경영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지표들로 대체되어 온 입법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0%가 승계 과정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세금 부담’을 꼽았으며, 가업상속공제 활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관리요건 이행의 까다로움(13.1%)’이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어 실질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표 2> 가업승계 세제 사후관리 규제의 실질화 연혁

시행연도	개정 내용	사후관리 지표변화	정책적 의미
2008	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10년 적용, 고용·자산·업종 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규정 체계화	기업의 계속성을 업종 동일성 중심으로 판단하는 규제 구조 확립
2014	사업용 자산 범위 엄격화	사업용 자산 중심 관리	자산의 실질적 사업성 기준 도입

시행연도	개정 내용	사후관리 지표변화	정책적 의미
2016	가업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증여·상속 시 양도세 과세 이연, 차후 양도 시 피승계인의 취득가액 적용	감면에서 이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초
2019	사후관리 기간 단축	10년→7년	승계 부담 완화
2020	사업용 자산 유지 규정 완화	사업용 자산 처분 후 일정 기간 내 대체 취득 또는 재투자 허용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른 생산적 자산 재배치 허용 (실질 중심의 사후관리로 진입)
2020	고용유지 요건 개편	정규직 근로자 수 외에 총급여액 유지 기준 선택지 신설	고용의 질적 지표 도입 및 경영 유연성 제고
2020	업종 변경 범위 확대	세분류→중분류 내 변경 허용	산업 전환 대응 및 경영 자율성 제고
2023	업종 변경 범위 확대	중분류→대분류 내 변경 허용	업종 동일성 규제 완화 및 기업의 사업 전환 유연성 확대
2023	고용 요건의 단순화 및 완화	매년 80% 유지 의무 폐지, 5년 누적 평균 기준완화 (100%→90%)	사후관리 부담 실질적 경감 및 회복 탄력성 부여
2023	사후관리 기간 추가 단축	7년→5년	가업승계 사후관리 규제 완화 및 제도 부담 경감
2023	납부유예 제도 도입	납부유예 적용 시 업종 유지 의무 적용 제외	새로운 사후관리 패러다임 제시
2025	백년가게 업종 포함	서비스업 등 지원 확대	업종 범위 실질 확대

<출처 :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가장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고용 유지 요건의 질적 전환이다. 과거 사후관리는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연도별 인원수 점검'이라는 형식적 지표에 의존하였으나, 이는 자동화 공정 도입이나 업황

악화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입법자는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출하는 전체 인건비 규모를 측정하는 '총급여액 선택제'를 도입(2020년)하였으며, 이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기준 지표를 '통산 평균 90%'로 하향 조정(2023년)하였다.[13] 이는 외형적 고용 인원수보다 기업이 창출하는 전체적인 소득과 고용의 질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핵심 지표로 채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실질 중심의 전환은 사업용 자산 유지 요건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가업상속공제가 자산의 40% 이상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형태를 물리적으로 고착화하려 했던 것과 달리, 납부유예 제도는 독립적인 자산 유지 요건(40% 처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14] 이는 국가가 40%라는 형식적인 자산 유지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산의 유연한 재배치를 통한 '실질적 가업 경영의 계속성'을 사후관리의 본질로 파악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현행법이 자산 처분 대금의 연구인력개발비(R&D) 투자나 업종 변경에 따른 자산의 대체취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15] 역시, 형식적인 자산 보유보다는 자본의 생산적 운용을 가업 존속의 상위 가치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 조세부담 완화 시 이를 '설비투자(51.5%)'와 'R&D(12.2%)'에 재투자하겠다는 의향[16]이 높게 나타나 이러한 법적 방향성이 경영 현장의 수요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반면,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도 업종 유지 요건은 여전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라는 통계적 코드에 의존하는 가장 강력한 형식적 지표로 남아 있다. 실태조사 응답자의 53.8%는 이러한 업종 제한 규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17] 특히 납부유예 제도가 자산에 이어 업종 유지 의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해당 규정은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개별 자산의 처분 비율(40%)을 독립적인 사후관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6호 및 제7호.

16) 중소기업중앙회,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46면.

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18]은, 기업의 실질적 계속성이 고용과 경영 참여 등을 통해 담보된다면 업종이라는 형식적 굴레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질 중심의 사후관리 지표가 이미 구축된 현행 제도 내에서, 경영 자율성을 제약하는 형식적 업종 동일성 요건은 재검토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제도 구조 속에서 본 업종유지요건의 규범적 위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 유지 의무는 모든 제도에 공통된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는 독립적 요건으로 기능하나, 납부유예와 기회발전특구 특례에서는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이는 업종 유지가 기업 계속성의 불가결한 기준이 아니라 정책 환경에 따라 조정되는 가변적 규범임을 시사한다. 결국 실질적 지표들이 기업 실체의 존속을 직접 반영하는 데 비해, 업종 요건은 형식적 분류 코드에 매몰되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제약하는 행위 규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업종 유지 요건을 조세중립성, 비례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규범의 법리적 위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7) 중소기업중앙회, 앞의 보고서, 56면. 해당 조사에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제도 인지 집단에서 개선 요구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1항. 납부유예 제도의 사후관리상 징수 사유에는 업종 유지 의무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3＞ 가업승계 지원제도 종합 비교표

제도	근거법령	지원방식	세제혜택	사전요건	사후요건	관리기간	위반효과
가업상속 공제	상증세법 §18의2	상속세 과세표준 공제	최대 600억원 공제 (업력별 차등)	• 중소·중견기업 • 자산 5천억 미만 • 대상업종(시행령 별표) •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 상속인 가업종사	• 가업 종사 유지 • 업종 유지 (KSIC) •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평균 90% 이상 • 총급여 유지 평균 90% 이상 • 사업용 자산 40% 초과 처분 금지	5년	공제액 추징 ＋이자상당액
가업 상속세 납부유예	상증세법 §72의2	상속세 납부 이연	상속세 납부를 가업 유지 기간 동안 유예	• 가업 요건 충족 • 상속인 승계 요건	• 가업 종사 유지 •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70% 이상 • 자산 처분 제한	가업 유지 기간	유예세액 납부 ＋이자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6	저율 과세	5억 초과분 10~20% 저율과세	• 가업 요건 • 승계자 종사 요건	• 가업 종사 유지 • 업종 유지 • 휴·폐업 금지	5~7년	특례세액 추징 ＋이자
증여세 납부유예	조특법 §30의7	증여세 납부 이연	증여세 납부 유예	• 가업 요건 충족	• 가업 종사 유지 •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일정 기간	유예세액 납부
기회발전특구 (ODZ) 특례 적용기업	조특법 §99의4 상증세법 시행령 §15	요건 완화 특례	업종·대표자 요건 완화	• 특구 이전 또는 • 근로자 50% 이상 특구 근무	• 업종 변경 폭 확대 • 대표이사 요건 완화	일반 사후관리 준용	완화 규정 적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과 정부 발간 세제 해설자료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Ⅲ. 업종유지요건의 규범적 정당성 평가

1. 평가 기준의 설정

가업승계 세제상 조세특례가 조건부로 부여된다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사후관리 조건의 내용까지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감면이나 과세이연이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의무가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따라서 업종 유지 요건의 타당성은 단순히 '조건부 특례'라는 형식 논리가 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이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진 가업승계 세제들 사이에서도 업종 유지 의무의 채택 여부가 상이하다는 사실은, 해당 요건이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적 규범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업종 유지 요건의 규범적 정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조세가 기업의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세중립성 원칙이다.

나.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일반적 심사 기준인 헌법상 비례성 원칙이다.

---

19)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8 결정.
헌법재판소는 조세특례의 범위와 요건 설정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그 요건이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다.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의 요구이다.
라. 동일 목적의 제도들 간 규율의 정합성을 요구하는 체계정당성 원칙이다.

특히 업종 유지 요건은 기업의 경영자율과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간접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행정편의적 규율이 아니라 규범적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조세중립성 원칙에 따른 경제적 왜곡 분석

가. 조세중립성의 의의와 적용 기준

조세중립성 원칙은 조세가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범적 원칙을 의미한다.[20] 기업은 조세 효과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하여 투자와 사업 구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조세 규범은 이러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도는 본질적으로 일정한 정책유인을 통해 비중립적 효과를 의도한다는 점에서, 일반 조세와 동일한 수준의 중립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세특례에 대한 중립성 심사는 “조세특례 자체의 비중립성”이 아니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불필요한 왜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중립성은 조세가 기업의 선택을 ‘경제적 본질’이 아니라 ‘조세효과’에 의해 좌우되게 만드는 것을 경

20)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 Publishing, 2015, para. 10, p.20. 해당 보고서는 조세중립성이 ① 사업형태 간 형평성(equitable between forms of business activities)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고, ② 특정한 경제적 선택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며(minimising discrimination in favour of, or against, any particular economic choice), ③ 조세로 인한 공급·수요 왜곡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한다. 그런데 KSIC 기반 업종 유지 의무는 사업재편의 경제적 필요가 크더라도 '추징 위험 회피'가 우선 고려되도록 유인함으로써, 조세특례의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왜곡을 발생시킨다.

나. 업종유지의무가 초래하는 경제적 왜곡

현행 제도에서 업종 유지 의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대분류 내 변경만을 허용하고, 대분류 외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KSIC는 통계 작성과 행정 편의를 위해 설계된 분류체계로서, 급속한 산업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현실의 기업활동을 규범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디지털 전환(DX)과 녹색 전환(GX)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사업 재편(pivoting)을 요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이 곧바로 사후관리 위반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 투자 전환이나 신규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만드는 잠김효과를 유발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업종 변경 허용 범위가 KSIC 세분류·중분류에서 대분류 내 변경까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형적 완화가 신사업 진출의 실질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구조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의 산업 구조 재편은 동일 대분류 내 품목 변경에 머무르지 않는다. 최근 제조업 기반 기업은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결합된 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이른바 '서비스화(servitization)' 양상을 보이고 있다.[21] 예컨대 제조 장비 생산 기업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구

21) 제조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사례로는 Siemens의 산업용 IoT 플랫폼 'MindSphere', GE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Predix', Philips의 'Light-as-a-Service(LaaS)' 모델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이들 사례는 모두 전통적 제조기업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소프트웨어·플랫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독 모델로 전환하는 경우와 같이, 현대의 산업 전환은 대분류 자체를 넘는 융복합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행 가업승계 세제는 이러한 대분류 간 이동을 사후관리 위반으로 평가함으로써 산업 구조 재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현대의 신사업은 단일 대분류에 귀속되기 어려운 융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예컨대 헬스케어 디바이스 기업은 제조업(C)·보건업(Q)·정보통신업(J)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핀테크 기업 역시 금융업(K)과 정보통신업(J)의 경계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사업의 실질보다 형식적 KSIC 코드 중심으로 업종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어, 융복합 산업의 다층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기업이 신규 사업을 부수적으로 도입하였다가 성장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업종 코드 자체가 변경되어 추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신사업의 자연스러운 성장 자체를 사후관리 위험으로 전환시켜 기업의 혁신 투자와 사업 재편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넷째, 사후관리 단계의 대분류 변경 허용과는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산업으로의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결국 대분류 내 변경 허용이라는 형식적 완화는 동일 산업 내의 제한적 조정에 관한 유연성에 그칠 뿐, 산업 융복합과 서비스화로 대표되는 현대적 사업 재편의 흐름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 실증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은 업종 및 고용 유지를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 유지 의무가 형식적 규제를 넘어 기업의 사

도 스마트팩토리 SaaS 기반의 제조 데이터 서비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글로벌 선도 기업에 한정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전환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업 구조 조정과 전략적 전환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자료는 이러한 규제의 경제적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의 공식 발표(2024. 6. 20.)에 따르면, 2023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전년(147개) 대비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공제 결정금액 또한 총 8,378억 원에 달해 전년(3,430억 원) 대비 약 2.4배 급증하는 등 제도 이용의 양적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가 보편적인 승계 수단으로 안착하고 제도 활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업종 유지 의무가 초래하는 경제적 왜곡의 파급효과 역시 구조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23년 공제 규모가 2019년 대비 건수 기준 2.1배, 공제액 기준 3.5배나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22] 역설적으로 8,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과 인적 조직이 경직된 업종 규제에 묶여 혁신의 기회를 상실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변화된 실증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범의 합리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3. 헌법 및 조세법적 원칙에 따른 법리적 타당성 평가

가.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의한 평가

(1) 수단의 적합성

기업의 영속성을 업종 코드의 유지라는 형식적 척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업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특정 한국표준산업

22) 국세청,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보도참고자료, 2024. 6. 20., 1～2면. 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업상속공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2019년과 비교할 때 공제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KSIC) 코드라는 외형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축적된 숙련과 노하우, 이른바 기업특수적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Becker의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23] 특수 인적자본은 조직의 해체와 함께 사회적으로 소멸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의 규범적 지향점은 '형식적 업종 코드의 고수'가 아니라, '인적 조직의 생존'을 통한 자산 소멸 방지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 전환(Pivoting) 사례[24]는 업종의 경계가 기업의 실질적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후지필름(Fujifilm)은 사양 산업인 필름 제조(화학)에서 바이오·화장품 업종으로 전환하며 대분류를 완전히 이탈하는 사업 구조 전환을 이루었으나, 기존 인력이 보유한 화학 공정 숙련과 항산화 기술이라는 특수 인적자본을 새로운 시장 가치로 전이시킴으로써 기업의 실질적 영속성을 확보했다. 만약 후지필름이 현행 제도와 같은 경직된 업종 유지 의무에 묶여 있었다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 대신 사양 업종 고수를 선택하다 인적자본 활용 기회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결국 가업의 실질적 계속성은 인적 조직이 유지되는 가운데 산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진화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현행 제도가 대분류 유지라는 형식적·행정적 기준을 고수하여 사업 전환의 범위

---

23) Gary S. Becker,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p.33~39.

24)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인적자본의 재배치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전환을 이루었다. 예컨대 Fujifilm은 디지털카메라의 확산으로 필름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자, 필름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콜라겐 및 항산화 기술을 바이오·화장품 분야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Nintendo는 화투 및 완구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콘텐츠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비디오 게임 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IBM은 하드웨어(PC) 제조 중심의 사업 체계에서 축적된 인적 숙련을 활용하여 IT 솔루션 및 컨설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였다. 이들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대분류를 넘는 사업 전환을 단행하였음에도 조직 내부의 특수적 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 계속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를 한정하는 것은, 규제 수단이 제도의 근본 목적인 기업 존속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따라서 사후관리 단계에서 기업특수적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산의 유연한 재배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업종 유지 의무를 폐지하여 정책 수단의 적합성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기본권 제약이 가장 적은 대안이 존재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정책 목적을 지닌 여타 가업승계 지원 제도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현행 업종 유지 요건의 최소침해성 여부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규범적 의의를 지닌다.

2023년 도입된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는 업종유지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가업 종사, 고용 유지, 지분 유지 등 실질적 지표를 통해 사후관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업종 고착화라는 강력한 규제 없이도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증명한 사례이며, 현행 가업상속공제상의 업종유지의무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또한 자산 처분 시점까지 자본이득을 추적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정합적 장치를 제공한다. 사후관리 위반 시 양도소득세액 조정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사전적 업종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납세자의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크게 제약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업종 규제 없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대안적 수단이 이미 현행법 체계 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제형 제도에서만 형식적 업종 동일성을 강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는 납부유예 제도의 존재 자체가 업종 유지 의무가 필수적 요소가 아님을 제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3) 법익의 균형성

업종 유지 의무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가업의 존속과 고용 안정이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초래하는 사익 침해는 단순한 행정상 부담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상속공제는 감면의 대가로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정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제가 반드시 '업종 동일성'이어야 할 필연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 유지, 총급여액 유지, 적극적 사업자산 비율과 같은 실질 지표가 더 직접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업종 유지 의무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나.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에 의한 평가

업종 유지 의무는 표면적으로는 KSIC라는 객관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규율 구조는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첫째, 융복합 산업의 확산으로 기업 활동이 복수의 산업분류에 걸치는 경우가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둘째, 평가심의위원회의 예외 인정에 의존하는 구조는 규범 판단을 행정재량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사전적으로 업종 변경의 허용 여부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원칙에 긴장 관계를 초래한다.

다. 체계적 정당성 원칙에 의한 평가

가업승계 세제는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복수의 제도가 결합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 규범의 세부 내용은 제도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감면형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에서는 업종유지의무가 핵심적인 사후관리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연형 제도인 납부유예 제도에서는 업종 동일성이 사후관리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역시 자본이득의 추적과 과세 시점의 조정을 목적으로 할 뿐, 업종 변경 여부를 독립적인 규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규율 구조는 동일한 입법 목적을 지닌 제도 간에 사후관리 규범이 통일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납부유예 제도가 업종 규제 없이 가업 종사, 고용・지분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 실질적 지표만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은, 업종 유지 의무가 가업승계 세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기보다 특정 지원 방식에 부수된 선택적 규율에 불과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제형 제도에서만 형식적 업종 동일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현행 구조는 제도 간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즉, 업종 유지 의무의 존치 여부는 단순한 정책적 선택을 넘어, 동일 목적을 가진 제도 간의 체계 정당성 원칙과 직결된 규범적 쟁점이다.

4. 실증자료를 통해 본 업종 규제의 혁신 저해 효과

Ⅱ.와 Ⅲ.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이용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규범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가 더 이상 예외적 특례가 아니라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승계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계적 실질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실증적 근거들과 궤를 같이 한다. 경영자의 능력을 반영한 실증 분석을 통해, 오랜 기간 역량을 축적한 중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속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경영권 위기를 겪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이며, 이들에 대한 가업상속세 감면이 자본 형성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GDP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25)]

제도의 활용 범위가 이처럼 확대될수록 사후관리 요건이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구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한 규모의 기업 자산과 경영 조직이 여전히 '업종 유지'라는 경직된 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해당 규범이 초래하는 경제적 왜곡이 이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환 과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기회발전특구(ODZ) 제도에서 업종 변경을 전면 허용한 사례는, 업종 동일성이 기업 계속성의 필수 지표가 아님을 입법적으로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보편화와 입법적 변화를 종합할 때, 현행 제도의 업종 유지 의무는 과거 산업 구조를 전제로 형성된 규율 방식이 관성적으로 유지된 결과로서, 오늘날의 산업 전환과 융복합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실질적 계속성 중심의 대안적 규범 설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5) 라정주, 앞의 논문, 72~73면.

Ⅳ. 주요국의 실질 중심 사후관리 모델 분석

1. 비교법적 검토의 목적과 분석 기준

가업승계 세제를 둘러싼 글로벌 담론의 핵심은 더 이상 '부의 대물림' 여부에 머물지 않는다. 가업승계 세제의 정책적 기능은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숙련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집적된 '사회적 무형자산의 보존'에 있다. 이는 후계자 부재나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른바 '조용한 폐업(Silent Closing)'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산업 전환기에는 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경영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업의 영속성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형식적 코드에 묶어둠으로써,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 환경에서의 '사업적 피보팅(Business Pivoting)'을 법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된 사후관리 체계는 기업의 적응적 진화를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는 규범적 역설을 낳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이 기업 혁신의 유인이 아닌 성장의 장애물로 작동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규제가 주요국의 제도 운영 방향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적 요구와 어떻게 괴리되어 있는지를 다음의 기준을 통해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가. 경영 실체(Business Substance)의 판정 지표이다. 즉, 기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업종 코드'라는 형식적 기준과, '적극적 사업 자산 및 고용'이라는 실질적 지표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그 성격이 대비된다.

나. 조세회피 방지의 실효적 수단이다. 업종 제한이라는 포괄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수동적 자산(Passive Asset) 비율 통제와 같은 정교한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어떻게 변칙적 승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다. 구조적 재편(Restructuring)의 수용성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의 생태적 생존을 보장하는 해외 세제의 유연한 설계 원리를 분석한다.[26]

라. 국내 제도의 규범적 진화 방향이다. 이미 납부유예 제도 등에서 나타난 실질 중심의 변화가 '예외적 허용'이 아닌 '일반적 원칙'으로 확립되어야 할 당위성을 살핀다.

2. 유산취득세 체계의 사후관리 모델 : 독일·일본

가. 독일 : 총급여액 유지와 관리자산 통제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ErbStG)은 '생산적 가치 창출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 총액 유지와 관리자산의 비중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ErbStG § 13a Abs. 3에 따른 급여 총액 유지 의무(Lohnsummenregelung)는 기업의 고용 창출 실체를 유지하는 핵심 지표로 작동한다.[27] 아울러 2024년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과 2025년 연례조세법(Jahressteuergesetz 2024)을 통한 개정으로, 가업승계 세제는 디지털 자산의 평가 방식 구체화 및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며 실질적 사업 자산의 보호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28]

---

26) KOTRA 해외시장뉴스, "2024－2026년 독일 경제 전망", 2024. 11. 4.,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221382(검색일 : 2026. 3. 7.).

27)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ErbStG) §§ 13a Abs. 3, 13b Abs. 2, BGBl. I S. 3418 (2024).

28) 2024년 3월 27일 공포된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과 2025년부터 시행되는 연례조세법(Jahressteuergesetz 2024)은 상속비용 일괄공제액을 종전 10,300유로

(1) 총급여액(Lohnsumme) 지표의 도입 배경

독일이 고용 인원수가 아닌 급여 총액을 사후관리의 핵심 지표로 삼는 이유는 '고용의 질적 보존'에 있다. 자동화 공정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제조 환경에서, 숙련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체 인건비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 인원수 숫자 맞추기보다 지역 경제 유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관리자산(Verwaltungsvermögen)의 정교한 통제

독일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관리자산(Passive Asset)' 개념을 통해 조세회피를 통제한다.[29]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업승계 혜택이 고용 유지 등 공익적 기여를 전제로 해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 사업 자산이 아닌 자산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30] 이에 따라 2016년 개정된 독일 상속세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요트, 귀금속, 고가 미술품, 빈티지 자동차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수동적 자산(Verwaltungsvermögen)'으로 명시하여 공제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31] 이에 따라 독일은 관리자산

에서 15,000유로로 상향하는 등 상속세제의 현실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추진하였다.

29) KIPF 세법연구센터, "독일－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일부 요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5－0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2면.

30) 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17. Dezember 2014 － 1 BvL 21/12 －, BVerfGE 138, 136, Rn.156～18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구성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고용 유지 등 공익적 기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광범위한 조세 혜택이 인정되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자에게 2016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독일 입법자는 업종 유지와 같은 형식적 기준보다 자산의 성격에 따른 실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사업용 자산과 수동적 자산(Verwaltungsvermögen)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31) ErbStG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 13b Abs. 4 Nr. 3.

비중이 90%를 초과하는 기업은 아예 혜택에서 배제하고,[32] 자산 성격별로 공제 비율을 차등화하는 정교한 통제 구조를 갖추었다.

(3) 생산적 재투자(Re-investment)의 원칙

독일은 사업용 자산의 처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처분 대금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사업용 설비나 기술에 투입하는 '재투자'를 행할 경우 경영의 연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기업이 시장 환경에 맞춰 자산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특히 2024년 3월 공포된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 등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의 처분과 재투자 관련 절차적 요건을 정비하였다.[33] 이는 국가가 특정 업종을 강제하기보다, 기업의 실체인 '인적 조직(급여 총액)'과 '생산적 자본(사업용 자산)'이 유지되는 것 자체를 가업의 계속성으로 인정하는 입법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E 138, 136)을 계기로 개정된 독일 상속세법은 제13b조를 통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리자산(Verwaltungsvermögen)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요트(Jachten), 귀금속(Edelmetalle), 고가 미술품(Kunstgegenstände), 빈티지 자동차(Oldtimer) 등 사적 소비 또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2024년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 BGBl. 2024 I Nr. 108) 등을 통해 자산의 생산적 활용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형식적 업종 규제 없이도 사업용 자산과 수동적 자산을 구별하여 변칙적 승계를 통제하는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32) ErbStG § 13b Abs. 2.

33) Wachstumschancengesetz vom 27. März 2024 (BGBl. 2024 I Nr. 108).
동 법률은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가업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산 처분 및 대체 취득(Re-investment)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세제상 유인을 강화하였다. 이는 공급망 재편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용 자산의 재배치를 기업의 단절이 아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수용하려는 입법적 방향을 반영한다.

나. 일본 : '대폐업' 위기 인식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로 인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정책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물가 상승과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금융 지원 및 경영개선책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일본 정부는 사업승계 문제를 단순한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34]

(1) 특례조치의 탄력적 운용

일본의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는 일반조치와 달리 고용 유지 요건을 납세유예의 기계적 유지요건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조치에서는 승계 후 5년간 평균 고용의 80% 유지를 납세유예의 필수적 요건으로 강제하지만, 특례조치에서는 이를 유예의 절대적 유지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즉, 고용 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납세유예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절차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35] 이는 규제가 기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위기를 버텨내도록 돕는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즉 일본의 사업승계세제는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이며, 고용 유지 요건 역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

34) 中小企業庁,『中小企業白書 2025年版』, 経済産業省, 2025, Ⅰ-21頁.

35) 김대홍, "일본 경영승계원활화 사업승계세제 연구",『비교법연구』제21권 제3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1, 37면 ; 租税特別措置法 第70条の7の5 및 第70条の7の8. 일본의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는 5년 평균 고용의 80% 유지 요건을 납세유예의 절대적 유지 요건으로 보지 않고, 보고 및 사후관리 중심의 요건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정경영혁신등지원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유예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절차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2) 비세제 지원과의 결합

일본은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승계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며 민관 합동 승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기업 존속을 위한 입체적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36] 일본에서는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사업승계・인수지원센터(事業承継・引継ぎ支援センター)」를 중심으로 사업승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공단체와 금융기관 등 지역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자의 사업승계 준비와 상담 연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7] 이러한 정책은 경영자가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사업승계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에서는 지역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소기업의 폐업이 거래기업의 사업 지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지역 산업 전체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거래처 기업이 후계자 부재 등의 이유로 폐업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기업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거나 승계 준비를 촉진하는 이른바 '공급망 사업승계(Supply-chain succession)'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업승계를 단순한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산업 기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 정책 과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8]

특히 일본의 사업승계 정책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 심각한 인력난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기업의 존속 자체를 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사업승계세제 특례의 탄력적 운용과 사업승계 지원센터・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등 다양한 비세제 지원 정책을 결합하여

---

36) 조선일보, "해외선 정부가 나서 '승계 중매쟁이' 역할", 2025. 12. 5., https://www.chosun.com/economy/smb-venture/2025/12/05/NGDZFSV22VEEROS7MQ2AB2EJPQ (검색일 : 2026. 3. 7.).

37) 中小企業庁, 前掲書, Ⅰ-125頁.

38) 中小企業庁, 上掲書, Ⅰ-124頁.

기업의 지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는 기업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것 역시 기업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며, 따라서 업종 변경 자체는 정책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업종 동일성 유지 여부를 사후관리의 주요 판단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3. 자본이득세 체계의 모델 : 캐나다·호주

자본이득세(CGT) 중심의 과세 체계를 운영하는 캐나다와 호주는 기업의 계속성을 판정함에 있어 행정적인 업종 분류보다는 '자산의 실질적 사업 투입'이라는 실질적 가치에 집중한다. 이들 국가에서 가업승계 세제는 기업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것을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하며, 자산이 여전히 생산적인 상태라면 세제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과세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

가. 캐나다 : 적극적 사업자산(ABA) 테스트를 통한 실질 중심 검증

캐나다는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경영자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10년간 약 2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이전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인 서면 승계 계획(Formal written plan)을 갖춘 소기업 경영자는 전체의 9%에 불과하며, 나머지 91%는 비공식적 계획에 의존하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등 경제적 연속성 단절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이다.[39] 특히 COVID-19 팬데믹을 거치며 캐나다 경영자의 약 39%가 승계 타임라인을 변경하는 등 경영 불확실

39) CFIB, *Succession Tsunami : Preparing for a Decade of Small Business Transitions in Canada*, CFIB, 2023, p.2, p.10.

성이 확대되었다. 경영 현장에서는 승계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업을 전환(Pivot)'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이 생존의 핵심 요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캐나다 세제는 기업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자산의 생산적 실질이 유지된다면 경영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적격 소기업 주식(QSBC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40]

(1) 캐나다의 계속성 판단 기준은 '적극적 사업자산(ABA) 테스트'이다.[41] 이는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실제 영업 활동에 주로(principally) 사용되는 적극적 자산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적극적 사업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재고자산・건물・기계・특허권 등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산을 포함한다.[42] 법인 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이 적극적 사업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의 외형적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경영의 실질적 계속성이 인정된다.

(2) 캐나다는 정교한 조세회피 방지 장치를 통해 업종 규제 없이도 제도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QSBCS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 처분 또는 승계 시점에 법인의 자산 공정가치 중 90% 이상이 적극적 사업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해당 주식의 보유 기간(Holding Period) 요건에 따라 처분 전 24개월 동안 법인 자산 가치의 50%를 초

---

40) CFIB, *op. cit*., p.2, p.4, p.11.

41) Income Tax Act, R.S.C. 1985, c. 1 (5th Supp.), s. 110.6. 본 조항은 적격 소기업 주식(QSBCS) 요건 및 적극적 사업자산 기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42) 적극적 사업자산(Active Business Assets)은 재고자산・건물・기계・특허권 등 법인의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적 자산을 의미한다. 반면 수동적 자산(Passive Assets)은 투자용 주식, 임대용 부동산, 과도한 현금 보유 등 직접적인 사업 활동과 무관한 투자성 자산을 의미하며, 캐나다 세제는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세제 혜택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과하는 자산이 지속적으로 적극적 사업용으로 공여되어야 한다.[43] 이는 승계 직전에 투자자산을 일시적으로 사업자산으로 전환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변칙적 행위를 차단하는 정교한 조세회피 방지 장치로 기능한다. 결국 캐나다의 ABA 모델은 특정 업종의 유지 여부가 아니라, 생산적 자본이 실제 사업 활동에 계속 투입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사업 활동이 실제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업종의 형식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캐나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최대 승계 장벽이 '적합한 매수자 확보(54%)'와 '기업 가치 평가(43%)'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가 업종 유지라는 형식적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원활한 퇴로와 승계를 저해하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모델은 특정 업종의 유지 여부가 아니라 생산적 자본이 실제 사업 활동에 계속 투입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는 기업이 외부 충격에 대응해 스스로 사업 모델을 진화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44]

---

43) Income Tax Act, R.S.C. 1985, c. 1 (5th Supp.), s. 110.6(1)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 본 조항은 적격 소기업 주식(QSBCS) 판정에 있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특정 업종의 동일성 유지를 계속성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주식 처분 시점에 법인 자산 가치의 90% 이상이 적극적 사업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처분 전 24개월 동안에도 자산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사업 활동에 사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법문은 "assets used principally in an active business"라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업종 분류가 아니라 자산이 실제 생산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44) CFIB, *op. cit.*, p.2, pp.12～14.

나. 호주 : 적극적 자산 테스트와 소기업 CGT 감면제도의 조화

호주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를 중심으로 한 과세체계를 운영하면서, 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기업 자본이득세 감면제도(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적 업종 분류보다 사업 자산의 실질적 사용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45] 특히 호주 소득세평가법(ITAA 1997, s. 152-35)은 적극적 자산 테스트를 통해 자산 보유 기간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는데, 이는 업종의 형식적 동일성보다 '사업 자산으로서의 실질적 사용'을 계속성 판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적극적 자산 테스트(Active Asset Test)

호주 세법은 소기업 CGT 감면제도 적용의 대전제로 적극적 자산 테스트(Active Asset Test)를 요구한다. 이는 특정 자산이 보유 기간 중 실제 사업 활동에 공여되었는지 여부를 시간적·실질적 지표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호주 「소득세평가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에 따르면, 해당 자산이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체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거나 사용 준비 상태(held ready for use)에 있어야 한다.

시간적 요건과 관련하여, 자산을 15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에는 전체 보유기간의 최소 50% 이상을, 15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최소 7.5년 이상을 실제 사업 활동에 사용해야만 경영의 계속성이 인정된다.[46] 이러한 설

---

45)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 : Guide", 2023.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th) ss. 152-10, 152-35, 152-40.
호주 세법은 소기업 CGT 감면의 기본 요건으로 적극적 자산 테스트(Active Asset Test)를 규정하고 있으며, ITAA 1997 s. 152-35는 자산의 사업 사용 기간 요건을, s. 152-40은 적극적 자산의 범위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46)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th) ss. 152-10, 152-35 및 152-40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Ibid.*, 2023.

계는 기업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산이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에 투입되고 있다면 이를 기업의 실질적 계속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실질 중심의 입법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 '적극적 자산(Active Asset)'의 범위에는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이나 특허권과 같이 사업과 본질적으로 연결된(inherently connected) 무형 자산이 포함된다. 반면, 임대수익·이자·로열티 등 투자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대가 일시적인 경우나 사업 활동을 통해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47] 이와 같은 기준은 업종의 형식적 동일성보다 자산의 생산적 활용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려는 호주 세제의 핵심적 특징이다.

(2) 소기업 CGT 감면제도(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

Active Asset Test를 충족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기업 CGT 감면제도(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업 자산의 처분이나 재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이다.

호주 CGT 감면제도는 크게 네 가지 장치로 구성된다.

(가) 15년 보유 면제(15-year exemption)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 자산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이다.[48]

---

47)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th) ss. 152-35, 152-40.
s. 152-40은 적극적 자산의 범위를 사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유형·무형 자산으로 한정하고 투자 목적 자산을 제외하고 있으며, s. 152-35는 해당 자산이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계속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8)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th) s. 152-105.

(나) 50% 적극적 자산 감면(50% active asset reduction)은 사업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의 50%를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제도이다.[49]

(다) 은퇴 면제(retirement exemption)는 사업자가 은퇴 과정에서 사업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자본이득을 면제하는 장치이다.[50]

(라) 재투자 이연제도(rollover relief)는 사업 자산을 처분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이다.[51]

예컨대 경영자가 노후화된 산업 설비를 매각하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첨단 기술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이 계속하여 영업활동자산으로 사용되는 한 자본이득세 과세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는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기업이 자산 구조를 유연하게 재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3) 제도의 정책적 의미

호주의 소기업 CGT 감면 체계는 세제가 경영자의 사업 재편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세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는 가업의 유지를 정적인 상태가 아닌 '생산 자본의 지속적인 운용'이라는 역동적 생존 과정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이 체계는 기업이 산업 융복합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법적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

앞선 비교법적 검토를 종합하면, 가업승계 관련 사후관리 제도의 핵심 관리지표가 업종의 형식적 동일성에 두어져 있는지 여부는 국가별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구조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과세 체계와 사후관리 지표를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

49)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th) s. 152-205.

50)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th) s. 152-305.

51)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th) s. 152-410.

<표 4> 국가별 사후관리 핵심지표 비교

구분	과세체계	사후관리 핵심지표	업종 변경에 대한 태도	조세회피 방지 장치
한국	유산세	업종 동일성(형식) + 고용·자산(실질)	원칙적 금지 (대분류 내 제한) (단, 납부유예 등 예외 확대[52])	KSIC 코드 일치 여부 확인
독일	유산취득세	총급여액 유지	형식적 업종제한 없음	관리자산(Passive Asset) 비중 통제
일본	혼합형(유산취득세 중심)	경영권 및 고용 실질 유지	업종 제한 사실상 폐지	사업승계 보고서 및 컨설팅 연계
호주	자본이득세	적극적 사업 (Active Business)	업종 개념 미적용	재투자 이연(Rollover) 요건 검증
캐나다	자본이득세	적극적 사업자산 비중	업종 제한 없음	적극적 사업자산 테스트 (90% 룰)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산취득세 체계인 독일과 일본은 고용 유지 또는 총급여액 기준을 중심적인 관리지표로 삼고 있으며, 자본이득세 체계인 호주와 캐나다는 적극적 사업자산 기준을 핵심으로 하여 형식적 업종 동일성을 별도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러한 비교는 업종 유지 의무가 가업승계 제도의 본질적 구성요소라기보다, 정책목표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적 수단임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 세법에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R&D)을 위한 자산 재투자를 인정하거나, 납부유예 제도에서는 업종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산의 생산적 활용을 중심으로 기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가업승계 세제 역시 형식적 업종 코드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의 실질적 계속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후관리의 중심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52) 2023년 도입된 납부유예 제도와 기회발전특구 특례 등 최근의 입법 흐름은 업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4. 비교법적 종합평가 및 시사점

가. 경영 실체 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구조적 재편의 수용

비교법적 고찰 결과, 주요국 세법은 표준산업분류(KSIC)와 같은 행정적 코드를 사후관리의 독립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캐나다 소득세법(s. 110.6)은 법인 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이 적극적 사업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경영의 실질적 계속성이 인정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호주 소득세평가법(s. 152-35) 역시 자산 보유 기간의 최소 50% 이상(15년 초과 시 7.5년 이상)이 적극적 자산으로 활용되었는지를 경영 계속성의 절대적 지표로 활용한다.

이러한 '적극적 사업자산(ABA) 테스트' 체계는 생산적 자본의 실질적 구성이 유지된다면 기업의 유연한 사업 재편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는 고용 유지 및 자산 처분이라는 실질적 사후관리 지표를 운용하면서도, 여기에 행정 편의적인 '업종 동일성' 요건까지 중복 부과하여 기업의 전략적 사업 재편을 제약하는 한국 세제의 경직성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이중 규제는 기업의 승계 의지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사후관리 요건 이행의 부담'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는 실질적 기여와 무관한 형식적 업종 분류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53]

---

53) 중소기업중앙회, 앞의 보고서, 49면 및 59면. 해당 조사에서는 사후관리 요건의 경직성이 기업의 승계 의지를 약화시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 국내 제도에의 시사점

한국 세법이 규정한 자산 처분 및 업종 변경의 '정당한 사유'는 이제 시혜적인 예외 조항을 넘어 계속성 인정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으로 법리적 격상이 필요하다.

(1) 이중 규제의 해소와 실질적 계속성 판정 : 현재 한국 제도는 고용 및 자산 유지라는 실질 지표와 업종 유지라는 형식 지표를 동시에 요구한다.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업종 분류(KSIC)라는 형식적 규율을 폐지하고, 자산이 R&D 투자나 설비 교체 등 생산적 목적으로 재배치되는 경우 이를 '구조적 진화'로 인정해야 한다. 즉, 캐나다의 24개월간 50% 초과 보유 요건이나 호주의 재투자 이연(Rollover Relief) 제도처럼, '자본의 생산적 운용' 자체를 사후관리의 본질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2) 고용 요건의 탄력적 운영 : 인구 절벽이라는 거시적 환경을 고려하여, 일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제도'를 참고함으로써 고용 지표 미달 시에도 실질적인 사업 지속 의지가 확인될 경우 폭넓은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글로벌 스탠다드는 '형식적 업종 규제의 폐지'와 '적극적 사업자산의 실질 강화'로 요약된다. 한국 역시 경직된 성격의 업종 유지 의무를 철폐하고, 기존의 고용 및 자산 유지 지표를 사업 전환과 조화롭게 재설계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Ⅴ. 산업 전환기에 부합하는 사후관리의 재설계

1. 사전·사후 업종 요건의 전면 폐지

가업승계 세제에서 업종 규제는 사후관리 단계의 추징 근거일 뿐만 아니라, 제도 적용 단계에서 일정 업종을 배제하는 사전적 진입 장벽(Entry Barrier)으로 이중 작동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지원 대상 업종' 열거주의는 과거 고도성장기의 산업 분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현대의 융복합 산업 구조와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외연을 확장한 것은, 역설적으로 특정 업종 열거주의가 더 이상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며 정책 목적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수단적 규범임을 입법적으로 자인한 사례이다. 이러한 업종 유지 요건이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며, 특히 신산업 진출 및 확장을 제약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유지 요건이 전면 폐지되지 못한 채 잔존하는 배경에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부정적 국민 정서라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도 활용의 본질적인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입법자가 근본적인 구조 개선보다는 지엽적인 사후관리 완화에만 치중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55]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54) 임동원,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KERI Brief』 23－04, 한국경제연구원, 2023, 16면.

55) 김신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고찰", 『세무와 회계 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4, 46면.

는 가업상속공제가 사적 자산의 승계라는 측면과 고용 유지 및 국민경제 활성화라는 공적 가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이 제도는 세액 공제라는 사적 혜택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성격을 지니며,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에 부여된 공익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수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56] 또한 상속과세의 기능과 역할은 부의 편중 정도와 자산 축적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세제 개편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57] 결국 업종 규제의 폐지 논의는 이러한 공적 의무와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실질 지표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계청이 명시하듯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산업 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체계일 뿐, 기업 활동의 실질적 계속성을 판단하는 규범적 척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이를 원용하여 기업의 생존 조건을 '코드(Code)'에 귀속시키는 것은 행정적 분류 체계를 기업 계속성 판단 기준으로 원용하는 데 따른 한계를 보여준다. 2025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8%가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거나 깊이 숙지한 집단(가업상속공제 인지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65.0%에 달했다.[58] 이는 제도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한 기업일수록 업종 규제를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산업 전환기에서의 기업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피보팅(Pivoting)'을 시

---

56) 문은희,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58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4면.

57) 한상국,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 2013, 16면.

58) 중소기업중앙회, 앞의 보고서, 56면. 해당 조사에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제도 인지 집단에서 개선 요구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도해야 한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결합하고, 오프라인 기업이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경영의 단절이 아니라 진화이다.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기업이 장기간 축적해 온 소중한 암묵지(Tacit Knowledge)가 소멸되어 결국 폐업과 일자리 상실이라는 국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경고하였다.[59]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신을 '업종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벌적 추징 위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가업의 영속성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규범적 역설'이다. 따라서 사전 단계의 업종 열거주의와 사후 단계의 유지 의무는 동시에 폐지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여부는 형식적 업종 분류보다 사업의 실질적 영위 기간과 생산적 자산의 유지 여부 등 실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2. 납부유예 및 이월과세와의 정합성 확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업종 유지 의무를 고수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 및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 원칙 측면에서 심각한 내부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조세법의 체계정당성이란 특정 조세 규범이 그 세법 체계 내의 다른 규범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입법자가 스스로 설정한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 가업승계 납부유예 제도와의 구조적 불일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도입된 납부유예 제도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여 존속을

59) 조병선 · 조봉현, "가족기업 승계 지원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53면.

도모한다는 정책 목적을 공유한다. 그러나 사후관리 규범의 설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공제 및 특례 제도(감면형)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업종 유지 의무를 엄격히 부과하는 반면, 납부유예 제도(이연형)는 이를 사후관리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입법자가 이미 "업종의 형식을 변경하더라도 기업의 경영권과 실질적 경제 실체가 유지된다면 가업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적 전제를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스스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동일한 '가업승계'라는 원인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가 어떠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업 전환의 자유가 결정되는 현재의 이분법적 규제 체계는 합리적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증여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납부유예는 동일한 정책 대상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업종 유지' 여부에서 상이한 규율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조세법상의 평등 원칙과 제도 간 체계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입법적 불비라 할 수 있다.

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의 법리적 정합성 결여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구조 하에서는,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향후 최종 처분 시점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을 추적·과세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조세 채권의 일실을 막기 위한 담보 장치로서 '업종 유지'라는 행위 규제는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단계에서 형식적 업종 코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인 추징과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과의 관계에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국가의 과세권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사업 재편이라는 기업의 사업 재편 자유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상속 시점에 모든 자본이득을 일시에 과세하기보다 자산의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이연)하는 방식이 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타당한 방안임을 강조하였다.[60] 이는 이월과세 제도를 통해 조세 채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유지라는 형식적 잣대로 기업의 사업 전환을 제약하는 현재의 체계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결국 동일한 가업 승계 상황에서 납세자가 '공제'를 선택하느냐 '유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업 전환(Pivoting)의 자유가 결정되는 현재의 이분법적 구조는 조세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특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통해 조세 채권이 종국적으로 확보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공제형 제도에서만 형식적 업종 코드를 고수하는 것은 규범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 편의적 잔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업 전환기에 부합하는 가업승계 세제의 현대적 재설계를 위해서는, 자본이득의 이월과세 메커니즘을 통해 조세 채권의 실질적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종이라는 형식적 굴레를 벗고 자본의 생산적 흐름을 추적하는 실질 지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업승계 세제가 단순한 세부담 경감을 넘어, 기업의 유연한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혁신 촉진적 규범으로 진화하는 법리적 토대가 될 것이다.

3. '정당한 사유'의 일반 원칙화와 사업 전환 보장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은 자산 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 대금을 연구개발(R&D) 투자나 시설 개체, 사업장 이전 등에 사용할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예외적으로 추징을 면제한다. 그러나 여기서 '정당한'이라는 추상적 용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

60)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7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19면.

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떤 투자가 정당한지, 어느 정도의 사업장 이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결정되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혜적 예외' 구조를 넘어 이를 기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산업 구조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자산의 재배치와 사업 구조의 전환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경영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이 수동적 투자자산으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의 생산적 활동에 재투자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업의 단절이 아니라 기업 활동의 발전적 진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추상적 예외 규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산의 생산적 재투자 여부를 중심으로 경영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보다 명확한 규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실질적 경영 계속성 중심의 통합 사후관리 모델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직면한 '대폐업(Great Closure)' 리스크는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반면교사가 된다. 일본은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미결정으로 인한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업종 및 고용 요건을 사실상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규제가 기업을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위기를 버텨내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세제가 기능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업종 규제를 대체할 실질적 규율 수단으로 캐나다의 적극적 사업자산 모델의 도입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 업종의 유지 여부가 아니라 생산적 자본이 실제 사업 활동에 계속 투입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총자산 중 실제 영업에 투입되는 적극적 자산의 비

중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적극적 사업자산(ABA) 테스트는, 업종 코드라는 형식보다 훨씬 정교하게 경영의 실체를 검증한다.[61]

이 모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수동적 자산(투자용 부동산, 과도한 현금 등)의 축적은 엄격히 차단하면서도, 자산이 사업 현장에서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한 기업의 유연한 사업 재편을 폭넓게 수용한다. 2025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57.2%가 완화된 조세 부담을 사업에 재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그중 51.5%가 설비 투자를 최우선으로 꼽은 점은, 이러한 실질 지표 중심의 전환이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자본 형성과 기술 혁신으로 연결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62]

5. 고용 지표의 탄력화와 사회적 책임의 보조지표화

고용 유지 요건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보라는 정책 목적 아래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경영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 유지 요건에 대해 '외부 요인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7.0%,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났다.[63] 초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 한 명의 고용 인원 미달만으로 수십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방식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은 독일식 '총급

61) Canada Revenue Agency,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s", CRA, 2022, p.3. 해당 자료는 캐나다 ABA 테스트의 판정 기준과 적극적 사업자산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62) 중소기업중앙회, 앞의 보고서, 45~46면.

63) 중소기업중앙회, 위의 보고서, 5면.

여액 유지(Lohnsumme) 기준'을 참고하여 고용의 질적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일본식 '사후 보고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자동화 투자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 기업 외부 요인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사후 보고 절차를 통해 기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관리 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및 사회공헌 관련 요소는 사후관리의 강행적 의무로 규정하기보다는 정책적 가점이나 요건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업승계 기업이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와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상생형 규제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가업승계 세제를 단순한 부의 이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정립하는 데 제도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의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업종 규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가업승계 세제를 실질 지표 중심의 '성장 지원형 조세정책'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의 업종 분류에 국한하여 현상 유지를 강제하는 '보존형' 과세에서 벗어나, 기업이 시장 변화에 맞춰 자본과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혁신 지원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가. 사전 · 사후 업종 요건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 백년가게 확대 사례

와 납부유예 제도의 운영 현황은 업종 명칭이 가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업종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대부분의 생산적 경제 활동을 포용하는 제도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 형식적 업종 동일성 중심에서 실질적 계속성 지표 중심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이는 규제 철폐를 넘어, 캐나다식 적극적 사업자산(ABA) 테스트를 모델로 삼아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실제 영업활동에 주로(principally) 사용되는 적극적 자산의 비중을 계속성 판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 체계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미 업종 유지 의무를 배제하며 규제 완화의 실효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납부유예 제도의 운용 원리를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통합 모델은 특정 업종 코드를 고수하게 하는 대신, 독일의 총급여액(Lohnsumme) 기준을 통해 인적 자본의 유지를 확인하고, 호주의 적극적 자산 테스트(Active Asset Test) 요건을 원용하여 물적 자본의 시간적·실질적 생산 공여를 검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법인 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이 적극적 사업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업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외형적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경영의 실질적 계속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식 사후 보고제를 결합하여 규제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면, 가업승계 세제가 기업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규범의 명확화와 재투자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행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시혜적 예외 인정 방식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생산적 자산의 재투자를 경영 계속성으로 인정하는 명시적 규범을 구축하여 기업의 합리적 피벗

(Pivot)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호주의 재투자 이연(Rollover Relief) 사례와 같이 조세 채권 확보와 기업 혁신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다.

고령화와 경영자 세대교체의 가속화는 우리 경제에 위기이자 산업 구조 재편의 기회이다. 업종 유지라는 형식적 굴레를 벗고 자본의 생산적 활용과 실질적 계속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때, 가업승계 세제는 단순한 감면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및 자료

국세청,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 보도참고자료, 2024. 6. 20.

김대홍, “일본 경영승계원활화 사업승계세제 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3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1

김신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고찰”, 『세무와 회계 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4.

김완석,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조세논총』 제5권 제2호, 한국조세법학회, 2020.

라정주,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규모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65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17.

매일경제, “[CASE STUDY] (21) 사업 다각화 모범생 후지필름 ‘필카(필름 카메라)’ 사라져도 필름 기술은 계속 진화한다”, 2017. 8. 21., https://www.mk.co.kr/news/business/7944652(검색일 : 2026. 3. 7.).

문은희,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58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박종수,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 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

임동원,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KERI Brief』 23－04, 한국경제연구원, 2023.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7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조병선 · 조봉현, “가족기업 승계 지원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조선일보, “해외선 정부가 나서 ‘승계 중매쟁이’ 역할”, 2025. 12. 5., https://www.chosun.com/economy/smb-venture/2025/12/05/NGDZFSV22VEEROS7MQ2AB2EJPQ(검색일 : 2026. 3. 7.).

중소기업중앙회,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5.
한상국,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3.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8 결정.
KIPF 세법연구센터, “독일－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일부 요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주요국의 조세동향』제15－0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KOTRA 해외시장뉴스, “2024－2026년 독일 경제 전망”, 2024. 11. 4.,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221382 (검색일：2026. 3. 7.).

2. 국외 문헌 및 자료

中小企業庁,『中小企業白書 2025年版』, 経済産業省, 2025.
租税特別措置法 第70条の7の5, 第70条の7の8.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Guide”, ATO, 2023.
Becker, Gary S., *Human Capital：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17. Dezember 2014 － 1 BvL 21/12 －, BVerfGE 138, 136.
Canada Revenue Agency,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s”, CRA, 2022.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 *Succession Tsunami：Preparing for a Decade of Small Business Transitions in Canada*, CFIB, 2023.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ErbStG).
Income Tax Act, R.S.C. 1985, c.1 (5th Supp.) (Canada).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th) (Australia).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 Publishing, 2015.
Wachstumschancengesetz vom 27. März 2024 (BGBl. 2024 I Nr.108).

＜Abstract＞

The Legitimacy and Limitations of the Industry Maintenance Requirement in Business Succession Taxation

Park, Hyek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and tax-law legitimacy of the industry maintenance requirement in Korea's business succession tax regime and analyzes its structural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substantive corporate continuity and tax neutrality in an era of industrial convergence and business restructuring. Methodologically, the study integrates three approaches : (i) a normative analysis grounded in the principles of tax neutrality, proportionality, clarity, and systematic justice ; (ii) an examination of the legislative history and internal consistency among the business succession tax deduction, tax payment deferral, and capital gains tax carryover regimes ; and (iii)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tax systems of Germany, Japan, Canada, and Australia. The analysis yields three principal findings. First, in light of the tax payment deferral regime that excludes the industry maintenance obligation, the capital gains tax carryover mechanism that secures tax claims, and the "justifiable cause" provision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ndustry identity should be regarded not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business succession tax regime but as a policy-adjustable regulatory requirement. Second, the formal industry identity requirement based on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creates lock-in effects and economic distortions, thereby restricting strategic business restructuring. Third, major jurisdictions design their post-management frameworks around substance-based indicators—such as payroll maintenance and the proportion of Active Business Assets (ABA)—rather than formal industry classificat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moving beyond the existing scholarly focus on the piecemeal relaxation of individual requirements by proposing an integrated post-management model centered on

* Certified Tax Accountant (CTA)

"substantive business continuity," which combines Canada's ABA test, Germany's payroll maintenance rule, and Australia's Active Asset Test. The study thereby presents a legislative direction for a growth-supporting business succession tax regime suited to the era of industrial transformation.

▶ Key Words : business succession, industry maintenance requirement, tax neutrality, substantive business continuity, active business assets (ABA), business succession tax deduction